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이은림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리며,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

□ 최근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초등학생의 등하교길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협소한 도로환경으로 차도와 분리된 통학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.

□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차량과 분리된 보행도로가 없는 학교에 대해 학교부지 일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의 설치·관리 시 이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안 제2조 제8호에 ‘학교용지’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하고
안 제6조 제2항 제4호에 ‘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’ 사항에 학교
용지를 활용한 설치·관리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 지난 2월 22일 제1차 현장방문 사
회장관회의에서도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도가 없는 학교의
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안전한 초등학교
통학로 조성 방안의 하나로 삼았습니다.

-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,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함께 안전한 초
등학교 통학로 확보에 있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
입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